

제2026-03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(2차)

성명: 미상

주소: 미상

파주시 공고 제2026-1599호, -168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경작 및 적치물을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하천 관리, 도시미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「하천법」 제69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	수량	대집행 방법
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0-2번지 일원	경작	1개소	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강제철거
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140-2번지 일원	경작	1개소	
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63-3번지 일원	경작	1개소	
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35-6번지 일원	경작	1개소	
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29-10번지 일원	경작	1개소	
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625-2(94-3)번지 일원	경작	1개소	

2026년 8월 28일

파 주 시

